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0가합598336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도기영, 안형윤

피 고 1. A 주식회사

2. B

3.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고현영

변 론 종 결 2021. 11. 3.

판 결 선 고 2021. 12. 15.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395,386,963원 및 그중 393,004,633원에 대하여 2020. 6.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B은 피고 A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393,004,6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8.부터 2021. 1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돈 중 395,386,963원 및 그중 393,004,633원에 대하여 2020. 6.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2. 13.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액을 4억 원으로, 대출과목을 중소기업자금대출로, 보증기한을 2022. 2. 14.까지로 하는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2019. 2. 13. 위 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면제받는 대신,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책임경영이행약정(이하 ‘이 사건 책임경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책임경영의무)

3. 업무상 횡령, 배임, 부당금품 제공 및 수수, 자금유용 등의 금지

4. 제5조에서 정한 기보보증서 담보대출의 용도 외 사용 금지

7. 기타 책임경영에 위반되거나 기보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행위 금지

제4조(책임경영의무위반 등) ① 제2조에서 정하는 책임경영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증의 효력이 중단될 수 있으며, 또한 보증회수 및 보증제한 등의 조치가 적용될 수 있음을 승인합니다. 특히 약정인은 책임경영의무위반 등으로 기보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5조(자금용도준수 등) ① 약정인과 보증의뢰인은 보증서 담보대출금의 집행계획을 기보에 제출하고 이를 용도에 맞게 이행하기로 합니다.

③ 보증서 담보대출을 부동산투자, 주식매입 등 제1항의 자금집행계획과 달리 집행한 경우와 경영위기 시 자구노력 없이 휴업, 폐업(사실상의 조업중단 포함) 및 부도 등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보는 제4조에서 정한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보증회수, 보증제한, 사전구상 및 고소·고발 등의 법적조치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다. 이 사건 책임경영약정 제5조에 따라 피고 B은 원고에게, 2019년에 원자재 구매에 3억 원, 제품개발에 1억 원을 집행하겠다는 내용의 자금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라.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게 2019. 12. 31. 피고 회사의 보증사고 발생(발생일자 2019. 12. 23.)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20. 6. 22.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출원리금 393,004,633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추가보증료는 2,382,330원이며, 이 사건 보증계약상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8%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대위변제금과 추가보증료 합계 395,386,963원(= 393,004,633원 + 2,382,330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393,004,63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20. 6.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1. 1. 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이 피고 회사가 2019. 2. 14.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은 직후인 2019. 2. 18. 위 대출금 중 2억 원을 피고 C에게 대여하고, 2019. 3. 12. 및 2019. 3. 15. 위 대출금 중 4천만 원을 개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위와 같은 지출은 피고 B이 원고에게 제출한 자금집행계획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적인 용도로의 지출이므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책임경영약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피고 B의 위 약정 제2조 제3, 4, 7호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인 대위변제금 393,004,6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추가보증료 2,382,330원도 구하나, 추가보증료는 피고 B의 책임경영약정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개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4천만 원은 거래처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이 사건 책임경영약정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 C에게 대여한 2억 원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원고의 손해와 피고 B의 책임경영약정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4천만 원은 원자재 구매나 제품개발 등 자금집행계획서에 따른 지출이 아님이 분명하고, 피고 C에게 대여한 2억 원이 변제된 시기는 이미 보증사고가 발생한 이후이므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한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무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라.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393,004,6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2. 8.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이행을 청구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피고 B에게 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 B이 배우자인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는 피고 B을 대위하여 피고 C에게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통보하는바, 피고 C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393,004,6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유일한 부동산이었던 인천 남동구 D아파트, E호를 F에게 매도하여 2019. 12.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현재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2) 피대위채권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참조).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피고 B와 혼인 중 피고 C의 단독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C는 적법하게 매매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추정되고, 을 제4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8. 11. 15. 본인 명의 계좌에서 계약금을 송금한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전적으로 피고 B이 부담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잔금 중 일부는 피고 B이 소유하던 아파트를 매도하여 마련한 돈인데 위 아파트는 피고 B이 피고 C와의 혼인생활 중 매수한 것으로 피고 C 역시 위 아파트의 매수 및 유지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 등기, 수리, 이사 등은 모두 피고 C가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B과 피고 C는 2019. 3.경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로 별거 중이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 C와 아들이 거주하고 피고 B은 2019. 5.경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거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반복하여,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그 대가를 부담하여 이를 취득한 후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대위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호, 판사 오택원, 판사 박예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G에 있는

H아파트 I동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J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1층

공동주택(아파트)

1층 118.83㎡

2 내지 31층 448.85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16층 K호

철근콘크리트구조

84.98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인천광역시 남동구 G

대 49143.4㎡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

대지권 비율 1. 49,143.4분의 57.282. 끝.

